

「고흥군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7월 20일

고흥군의회의장



고흥군의회 훈령 제2026-19호

고흥군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흥군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1.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및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의무를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호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

제4조(고발주체) ① 고흥군의회 사무과장과 공직윤리업무 담당자는 직무 수행 중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고흥군의회의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 여부의 판단) ① 의장은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의 고의성, 중대성,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의 누계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범죄행위자를 고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의장은 고발한 범죄행위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행위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기록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 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의장은 제4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발 장

1. 피고발인

○ 성 명 :

○ 주 소 :

○ 근 무 처 :

○ 생년월일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

■ **고흥군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illegible]